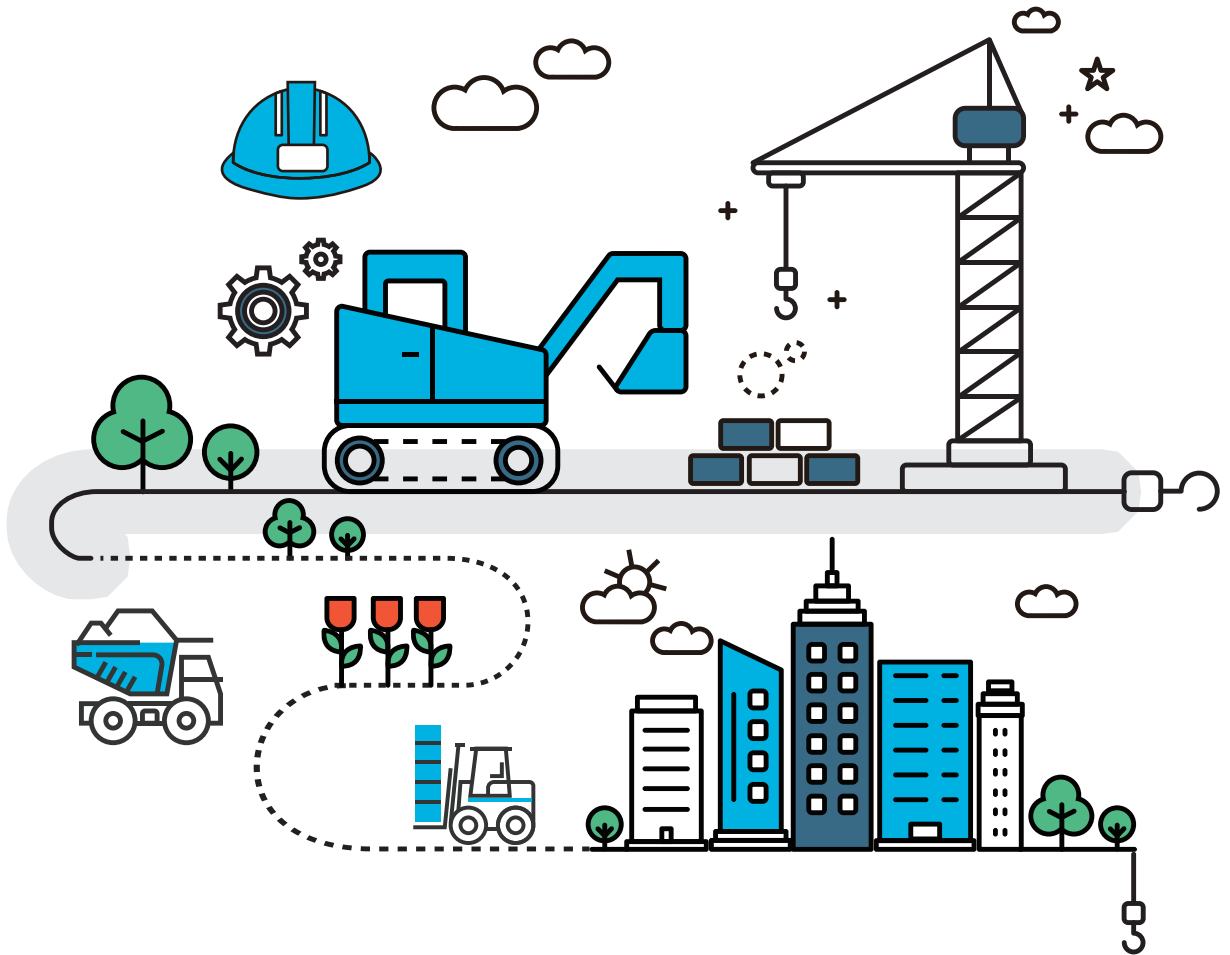


#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안내서

(도로용 3종 및 지게차, 굴착기 대상)



환경부  
교통환경과

# 01

##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수도권 지역의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건설기계 사용 시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를 의무 사용하도록 하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 ① 적용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신고 등)

### ② 대상 규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서 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저공해 조치”라 한다)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

### ③ 적용 시기

’20년 1월부터 적용(’20.4.3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 02

## 사용 제한 대상 건설기계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건설기계가 대상이며, 건설기계별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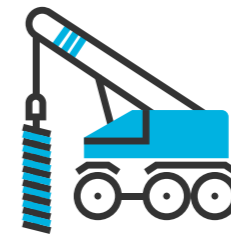
### ①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이 대상입니다.

\*’05년(Euro3)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 ⇒ 건설기계 DPF 부착 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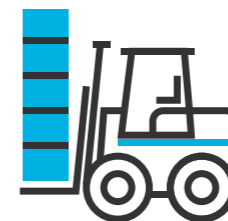


콘크리트믹서트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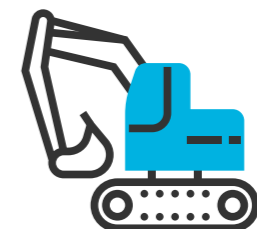
### ② 비 도로용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대상입니다.

\*’04년(Tier1)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 + ’03년12월1일 이전 제작 ⇒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



지게차



굴착기

# 03

## 사용 제한 유예 조치

소유자가 해당 지자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1차적으로 6개월간(조치 이행 기간) 유예가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의 예산부족 또는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최대 1년 (1차 유예기간 6개월 포함)까지 유예기간 연장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유예 연장기간(1차 유예기간 포함 1년) 동안 기술적 요인 및 예산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저공해 조치가 가능할 때까지 6개월 단위로 재연장 가능

### ① 저공해 조치 신청에 따른 유예

건설기계 소유주가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저공해조치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의 1차 유예 기간(저공해조치 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소유주는 유예기간 이내에 저공해조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유예 절차

소유자는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소유자 → 지자체)

지자체는 1차 유예 확인서 발급 (지자체 → 소유자)

소유자는 유예기간 내에 저공해조치 가능 여부 확인 (소유자 → 지자체 및 제작사 등)

지자체는 사안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유예 확인서 정정 발급 (지자체 → 소유자, 불임서식 2))

#### 〈사안별 사용제한 재유예 세부 기준〉

- ① (예산 부족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 해당 지자체는 유예기간(1차 6개월) 이내에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일로부터 1년간 사용제한을 연장(1차 유예기간 6개월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를 정정하여 해당 소유주에게 유예기간 만료 前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②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유예기간 연장) 해당 소유주는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조치가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 이내에 저감장치 제작사(또는 엔진교체 사업자)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는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일로부터 1년간 저공해조치 유예기간을 연장(1차 유예기간 6개월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를 정정하여 해당 소유주에게 유예기간 만료 前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04

## 저공해 조치 시 지원 사항

건설기계에 대한 적극적인 저공해조치 유도 및 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본인 부담 없이 한시적으로 조치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① 건설기계 DPF 지원 금액

(단위: 천원)

구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10,577	462
중형	7,778	462

※ 저감장치 성능유지 위해 보증기간(3년)동안 3회(45만원) 클리닝 지원(유지관리비 內 포함)

### ②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금액

(단위: 천원)

구분	지게차				굴삭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및 보조금	12,993	16,390	20,838	22,927	19,013	19,541	29,518

※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 05

## 자주하는 질문(FAQ)



### 신청서 서식이나 접수 등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서식은 해당 건설기계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요청하여 주시기바라며, 아래의 절차에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유예기간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세부 진행 절차

소유자는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계를 등록한 관할 지자체 (환경과 등)로 접수  
※ 저공해조치 신청서 서식은 지자체에 요청 바람(우측 서식 참고)

소유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자체는 1차 유예 확인서 발급

소유자는 유예기간(조치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자체 및 제작사에 저공해조치 가능 여부 확인

저공해조치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는 사안에 따라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유예 확인서 정정 발급

#### 신청서 서식(참고용)

건설기계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건설기계명
신청 건설기계 번호 (유대번호) (국소번호)	소유자 주소
저공해조치 신청	신청일자 :   년   월   일
<p>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시니 신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년   월   일	
소유자명	서명
<p><b>(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b> 위에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담당기관(자동차관리협회)과 관련 건설장 설치 운영기관(한국건설공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p>	



### 유예기간 연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건설기계 DPF는 어떤 장치인가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 등을 촉매가 코팅된 필터로 여과한 후, 이를 산화(재생)시켜 이산화탄소(CO<sub>2</sub>)와 수증기(H<sub>2</sub>O)로 전환하여 오염물질을 80% 이상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 ① 장착 전·후 비교



※ 부착 부품은 제작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② 장치 종류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10,577	462
중형	7,778	462

※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 06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

###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어떤 사업인가요?

Tier-1('04년) 및 '04년 이전의 배출가스 미규제로 제작된 지게차 및 굴삭기를 대상으로 구형 엔진을 Tier-3('09년) 이상 신형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엔진을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킵니다.

#### ① 교체 전·후 비교

실제 매연 배출  
(Tier1이하 구형 엔진)

엔진 교체에 따른 종이컵 오염 비교



#### ② 기종 및 규격별 보조금 지원 금액

(단위: 천원)

구분	지게차				굴삭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및 보조금	12,993	16,390	20,838	22,927	19,013	19,541	29,518

※ 규격은 건설기계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음

### 저공해 조치시 소유자 본인 부담이 있나요?

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본인 부담 없이 한시적('19년~'21년)으로 조치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니 조속한 조치 바랍니다.

신청 건설기계	건설기계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건설기계명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소유자 주소	
저공해 조치 신청 및 사용제한 유예 기간	신청일자 :       년       월       일 유예기간 :       년       월       일 까지	
유예 사유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1차 저공해조치 유예	
	<input type="checkbox"/>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조치 곤란	
	<input type="checkbox"/>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조치 곤란	
위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였으며, 위 사유에 따라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적용을 유예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관할 지자체장 직인		
발급기간 담당자 및 연락처 :		

# 07

## 유관 기관 연락처

### ① 전국 지자체(시·도)

기관(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저공해조치 02-2133-3654
	대기정책과	사용제한 02-2133-3656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저공해조치	032-440-3558
	사용제한	032-440-3552~4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저공해조치	031-8008-4230, 4288
	사용제한	031-8008-4230, 4288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051-888-3554, 3572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052-229-3153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053-803-5326, 5322, 4204
대전광역시 미세먼지대응과		042-270-5683
광주광역시 기후대기과		062-613-4342
창원시 환경정책과		055-225-3523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064-710-6084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		044-300-4265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043-220-4324
충청남도 환경보전과		041-635-2713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063-280-4184
전라남도 생활환경과		061-286-7052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054-880-3533
경상남도 기후대기과		055-211-6664, 6684
강원도 환경과		033-249-2243

### ② 협회 및 공단

기관(부서)	연락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
1. 저감사업 참여안내	1544-0907
2. 조기폐차 안내/신청	1577-7121
한국환경공단(전산센터)	032-590-5024
대한LPG협회(LPG 화물 등)	02-3474-6551

### ③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 제작사(사업자)

사업 구분	회사명	연락처	사업 구분	회사명	연락처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p-DPF)	(주)이엔드디	1644-2402	PM·NOX 저감장치	일진복합소재(주)	1588-7558		
		02-2029-7029			063-263-1700		
	일진복합소재(주)	1588-7558		(주)크린어스	1544-1198		
		063-263-1700			031-627-2900		
	HK-MnS(주)	1588-7657		(주)이엔드디	1644-2402		
		070-4267-2727			02-2029-7029		
	(주)크린어스	1544-1198		(주)세라컴	02-2628-0900		
		031-627-2900			041-531-0657		
	저공해 엔진 (LPG)	(주)에코닉스		1666-3243	건설기계 DPF 엔진교체	(주)크린어스	1544-1198
				02-2628-0900			031-627-2900
(주)세라컴		041-531-0657	(주)이엔드디	1644-2402			
		031-942-9008		02-2029-7029			
(주)씨엠씨		031-358-6752	HK-MnS(주)	1588-7657			
		031-358-6752		070-4267-2727			
(주)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일진복합소재(주)	1588-7558			
		1588-2631		063-263-1700			
(주)한국엔앰텍		1588-2631	(주)에코닉스	1666-3243			
		031-8021-1500		02-2628-0900			
일진복합소재(주)	063-263-1700	(주)세라컴	041-531-0657				
	063-263-1700		1588-8395				
엑시언	031-270-6300	(주)이엔드디	1644-2402				
	031-270-6300		02-2029-7029				
블루플래닛	070-7012-6600	엑시언	031-270-6300				
	070-7012-6600		02-2628-0900				
엔진텍	1588-2070	(주)세라컴	041-531-0657				
	031-355-4900		1544-1198				
		(주)크린어스	031-627-2900				
			1588-7657				
		HK-MnS(주)	070-4267-2727				



환경부  
교통환경과